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340

발의연월일: 2025. 1. 8.

발 의 자:신영대·전재수·김정호

박수현 • 윤준병 • 김종민

문금주 • 황명선 • 문정복

한준호 · 염태영 · 김기표

김용만 · 임광현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별·종교·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아야 함.

그러나, 국내 취업자의 20%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의무 건강 검진 기간에도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여 대다수 자영업 자가 국민의 권리인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실제로 연구조사에 따르면, 자영업자 10명 중 7명(69%)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근로자의 검진 불참 비율(10%)보다 7배나 높음.

이에 소상공인이 건강검진을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검

진율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12조의8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8(소상공인의 의료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건강검진(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및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지원 수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2조의8(소상공인의 의료 지원)
	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
	<u> 상공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</u>
	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
	<u> 상공인의 건강검진(「산업안전</u>
	보건법」 제130조제1항 각 호
	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
	공인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
	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
	다)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
	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
	상공인의 건강검진에 따른 영
	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
	소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정
	지원을 할 수 있다.
	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비
	용 및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전
	지원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
	정하며, 지원 수준·방법 및 절 카 드에 피ㅇ하 사하우 존스베
	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
	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.